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2006. 11. 1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0월 31일 · 김성온 의원 외 4인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3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2차 운영위원회(2006. 11. 1)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 성 온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19702호, 2006.10.17 공포)이 개정
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
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우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를 일 10,000원에서

일 20,000원으로 인상하고, 동표의 비고란 1.중 “출석”을 각각
“출장”으로 변경(안 별표 3)

다. 개정근거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7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: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라 도 균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